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3. 17.(금)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박병천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3년 3월 7일

○ 회부일자: 2023년 3월 9일

3. 제안 이유

○ 충청북도 내 학교 교육환경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 수은과 같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이 확보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물품구매(안 제5조)

○ 점검 등(안 제6조)

○ 실태조사(안 제7조)

○ 지원(안 제8조)

○ 교직원 연수 등(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5. 검토 의견

가. 조례 제정이유

○ 이 조례안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해 학생과 교직원 등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음.

○ 「교육기본법」 제17조의5[1] 및 제27조제1항[2]에서 국가와 자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을 정하면서 학교의 장이 이를 점검하고, 예방·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1)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별표 2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제3조제1항제1호의2 관련)

1. 체육장 등의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의 파손 여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학교시설 중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한편, 최근 학교 유해물질과 관련된 언론보도[1]를 살펴보면, 어린이 활동 공간 등 학교시설의 유해중금속 기준치 초과를 비롯해 학교 3D프린터 유해성 위험, 학용품 리콜 문제 등 교육 기자재까지 각종 유해물질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과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상위 법령의 유해물질 관련 대상이 주로 학교시설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 기자재 및 학습교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이에, 학교시설을 비롯해 교육 기자재, 학습교구까지 학교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유해물질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규정한 상위법령을 충실히 반영한 입법 조치이며,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1) ① 초등학교 3곳 중 2곳서 유해중금속 기준치 초과검출 : 2022. 7. 5. 매일안전신문
6개 시·도 학교 82곳서 유해중금속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점검 노력도 부실" : 2022. 7. 5. 연합뉴스
② 학교 3D프린터 10대 중 4대 '유해물질 정화 불가능' : 2022. 10. 12. 세계일보
③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완구·학용품 29개 제품 리콜 : 2023. 3. 6. 연합뉴스

나.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에 대해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유해물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위해, 「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 유해인자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써 교육 기자재, 학습 교구, 학교시설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및 점검 기준 내 항목’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에서는 학교 교육환경의 유해물질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감의 시책 수립과 학교장의 시행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에서는 교육감이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와 관련해, 학교 운동장(체육장)등의 학교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고, 학교의 교육활동 전반과 놀이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관련 부분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학교 내 안전과 관련한 영역이 세분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 유해물질 관리계획 수립 시, 다른 조례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 분야 관련 안전 조례 현황 〉

연번	조례명
1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2	충청북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3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4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5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6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7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안 제5조(물품구매)**에서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자재 및 학습교구의 구매, 시설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점검 등) 및 제7조(실태조사)**에는 학교 유해물질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점검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8조(지원 등) 및 안 제9조(교직원 연수 등)**에는 학교의 유해물질의 예방 관리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매뉴얼 개발을 비롯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제10조(협력체계)**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학교 교육환경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이 확보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가 충분히 인정됨. 또한, 주요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법령 입안·심사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청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참고]

타 시도 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기관	법령명	제 정 일
1	광주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	2021.07.01
2	서울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	2021.03.25
3	세종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	2021.11.10
4	인천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	2023.01.02
5	전남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 관리 조례	2022.04.07